

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차주식 의원 외 28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차주식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(안 제7조)
-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하기 위하여 시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등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3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

- 안 제4조는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5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함
- 안 제6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8조는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제작·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의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, 화장실 설치기준 마련,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, 실태조사 및 교육,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또한, 최근 학교 여자 화장실, 샤워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촬영 예방대책을 화장실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로 확대하는 것은,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